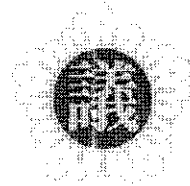


제230회 정례회
2004. 7. 14(수)

검 토 보 고 서

○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04년 7월 5일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 (2004.1.29. 법률 제7124호)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가. 출입국관계법령에 의거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제3조)
- 나.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투표대상을 정함 (제4조)
- 다.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함 (제5조)

- 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간으로 함 (제7조)
- 마. 청구인서명부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제8조)
- 바.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열람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도록 함 (제10조)
- 사. 일몰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 전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함 (제16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2004.1.29, 법률 제07124호)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2004.5.21~6.10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제2항 외국인의 주민투표자격, 제7조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 제9조제2항 주민투표 청구인 수, 제10조제3항 서명요청기간, 제12조제2항 서명 방식과 절차, 제7항 청구인서명부 보정기간, 제9항 주민투표청구에 관한사항, 제22조제2항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주민투표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 5호에서 정한 충청북도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5조 주민투표 실시요건 중 주민에 투표청구의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1/20까지 다르게 정하도록 권고한 비율에 따라 1/16로 규정하였으나,

주민투표권자 수의 1/16일 때 68천명, 1/20일 때 54.3천명의 서명을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80일 동안 받는 것은 사업의 적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의 서명보정기간을 15일로 규정한 사유와
안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본 조례로 규정하려는 주민투표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오늘날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와 구별되고,

또한, 주민의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